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2
----------	------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발 의 일 : 2016년 8월 12일
- 다. 회 부 일 : 2016년 8월 16일
- 라. 상 정 일 :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9월 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

### 가.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이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과 일부 불일치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학사업 추진 목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조)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학생”의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
- 제6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 근거 조항 개정(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추가 및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이 일부 불일치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안 제6조)
-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6.6.17. ~ 7. 6) 결과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민의 자녀로 타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목적(제1조) 및 용어(안 제2조)의 정의

- 본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청소년’을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조례상 장학금 지급대상이 불일치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1)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9세에서 24세이나, 정규교육과정에 속해있지 않은 청소년도 그 범위에 포함되며, 24세 이상 대학교의 재학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바, 「초·중등교육법」(제2조)2)과 「고등교육법」(제2조)3) 그리고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4)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지급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4)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용어의 명료화(안 제5조)

- 안 제1조에서 이미 서울장학재단의 목적을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실행 방법에 대해 목적과 중복되는 부분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p> <p>2. 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p> <p>3. · 4. (생략)</p>	<p>제5조(사업) ① -----</p> <p>-----.</p> <p>1. 장학금 지원 사업</p> <p>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p> <p>3. · 4. (현행과 같음)</p>

다.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안 제6조)

- ‘서울 시민의 자녀’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현행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서 ‘타 시·도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학교급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까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바, 정작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등분야 또는 대학분야의 수혜자들의 혜택이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학생의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나, 학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안 제2조에서 학생과 더불어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입학예정 중인 자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는바,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입학예정자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6조 각호는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주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할 경우 조문의 문구가 중복되는바,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 ④ (생략)	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제5조 제3항의 규정</u>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⑤ ----- ----- <u>제5조 제3항에 따라</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개정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따라”로 변경됨

#### 라. 사업계획의 제출(안 제16조)

- 안 제16조제1항에 신설되는 단서는 서울장학재단의 중장기 운영계획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시 향후 3년간의 수입과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 제2항은 서울시가 서울장학재단의 재원확보 상황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출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서울장학재단의 기금의 유치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마. 종합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과 조례상 지급대상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장학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서울장학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충분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의 제출 또한 타당하다고 하겠음.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되던 제한이 삭제되는 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형평성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과 함께 장학사업이 사실상 서울시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의 서울시 일반회계 또는 기금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9조제5항 중 “따라”를 삭제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2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9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5항 중 “따라”를 삭제함.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따라”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임원) ① ~ ④ (생략)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제5조제3항의 규정</u> 에 따라 정관 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u>제5조제3항에 따라</u>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제5조제3항에</u> ----- ----- .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들” 을 “학생”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6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를 “제5조제3항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

급이 시 재정애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u>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학생</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학생”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u></p>
<p>제4조(설립) 재단은 <u>「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u></p>	<p>제4조(설립) 재단은 <u>「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u></p>
<p>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u></li> <li>2. <u>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u></li> <li>3. · 4. (생략)</li> </ol>	<p>제5조(사업)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장학금 지원 사업</u></li> <li>2. <u>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u></li> <li>3. · 4. (현행과 같음)</li> </ol>
<p>제6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u></p>	<p>제6조(장학금 지급 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u>서울특별시(이하</u></p>

현행	개정안
<p>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p> <p>1.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p> <p>2.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p> <p>3.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p> <p>4.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p> <p>5.실직,파산, 질병 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p>	<p>“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p> <p>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p> <p>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p> <p>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p> <p>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p> <p>5. 그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p> <p>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p> <p>2.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9조(임원) ① ~ ④ (생략)</p> <p>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p> <p>⑥ (생략)</p> <p>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설)</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 ----- .</p> <p>제7조(재산의 조성) ① ----- ----- .</p> <p>1. 시-----</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제5조제3항에-----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 ----- ----- ----- .</p> <p>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자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 ----- -----.</p> <p>② (현행과 같음)</p>